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올림픽 휘장사업 공식후원사에 대한체육회 사업의 우선공급권 제공〉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32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올림픽 휘장사업 공식후원사에 대한체육회 사업의 우선공급권 제공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1. 25.
3. 회 부 일: 2025.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체육회는 현행법에 의거하여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은 금전후원의 급부로 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음.

그러나 공식후원계약 체결 이후 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은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구매계약을 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사’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개별적인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현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대한체육회는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등을 통해 후원사들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후원사들의 제도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이미 선정된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

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1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올림픽 휘장사업 공식후원사에 대한체육회 사업의 우선공급권 제공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휘장사업의 공식후원사에게 대한체육회 사업의 우선공급권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와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재산권(휘장권, 상표권 등)을 활용한 물품, 용역 등을 수익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u>

현행법은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21조제1항),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의

통합(2009.6.29.)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신하여 올림픽 회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 기업들을 ‘공식후원사’¹⁾로 선정하여 일반적으로 4년간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은 대한체육회에 대한 금전후원의 반대급부로 올림픽 회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음.

이후 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을 ‘공식후원사’로부터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올림픽 회장사업 계약 흐름]

① 공식후원사* 선정	② 후원 외 공식후원사와의 물품, 용역 등 계약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제7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5조 적용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개정안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미 선정된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 모집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다 안정적인 후원사 모집을 통해 전문체육 진흥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 선정된 공식후원사는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을 연계한 마케팅 권리, 회장 사용권리, 대한체육회 행사 및 홈페이지 등에 브랜드 노출권리, 대회 기간 중 국가대표 초상의 광고활용 권리 등을 제공받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사례²⁾를 감안할 때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인정하여 후원모집을 활성화하고 제공되는 물품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임.

- 이에 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림픽 회장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신규 및 중소기업체의 진입이 제한되어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 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한편,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대한체육회에 통합(2009.6.29.)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올림픽 회장 사업은 현재 통합된 대한체육회에서 수행하고 있고, 현행법상 대한올림픽위원회에 대한 근거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바 개정안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21조의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로 현행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375

2) 미국(USOC), 일본(JOC), 영국(BOA) 등의 올림픽위원회에서는 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수의계약)을 허용 중이며, 한국 대한체육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규모의 후원금*을 달성

*미국('24년 약 2,766억 원/ 나이키·폴로), 일본('22년 약 526억 원/ 아식스), 영국('23년 약 268억 원 / 아디다스), 한국('25년 약 46억원/의류후원사 부재)